

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1 . 22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장하진)

가. 제 안 이 유

-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
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에 있음.

나. 주 요 내 용

- 출산휴가를 “얻을 수 있다”를 “허가하여야 한다”로(안제23조)
- 여성보건휴가 대상을 “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한 휴가”까지
확대
- “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
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”를 신설
- 퇴직준비 휴가를 “ 명예퇴직, 조기퇴직,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
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”
까지 확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특징은 여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필히 실시하도록 강제화 하였고 여성보건 휴가중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한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며,

이는 여성공무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.

-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위한 1일 1시간씩 유아시간을 배려한 것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시대흐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
- 전체적으로 보면 본 조례는 도내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,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타법령과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. 끝 .